

의안번호	제62호
의결연월일	2017. 9. 25.

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8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25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과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 빈곤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